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수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 1. 12. 제천시장
- 회부일 : 2011. 1. 13.
- 상정일 : 2011. 2. 21.(제1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가. 제안이유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도시환경시설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정함(안 제4조)
-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력요청 및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5조)
- 공공디자인 시책의 추진 및 디자인 공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6조)
- 제천시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 디자인 심의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함(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수당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7조)
-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공공디자인 시책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학)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천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2월 8일부터 2010년 12월 2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제천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절차법적 하자는 없으며
-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제2조,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의 용어와 기본원칙을 정의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정책사업의 요청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자문, 교육, 홍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제8조는 중복적인 행정력과 인력의 낭비 요소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디자인 심의, 자문 예외규정을 두었고
-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40명으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명 이내로 한 것에 비하면 위원수를 위원회 의사, 의결정족수를 감안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제4항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10명 이내의 위원수로 하였으나 제13조의 소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중에서 효율적인 기능과 권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
-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 시는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나 직무대행자 지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분과위원장」 직제

순에 의하거나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 선출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 제13조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분과위원회의 존치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사안 발생시마다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짐
- 제15조 간사 및 서기는 제2항 담당주사는 직제에 맞게 담당 팀장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제16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 제3호 시책에 4회 이상 불참 경우가 모호하므로 위원회소집통지를 받고 4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동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제18조 디자인 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있어 디자인 센터의 기능이 디자인 관련 교육 및 강좌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가 주목적으로 센터 운영을 위하여는 운영비와 인건비등의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하므로 센터의 역할과 효율성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제9조 위원회 인원이 40명으로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 위원회와 소위원회등은 중복기능이 있음. 디자인센터 설치 운영의 위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양순경 위원)

나. 답변요지 <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

- 규칙으로 운영시 위원회 위원이 50명으로 조례는 40명으로 축소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음.

5. 소수 의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내 용

- 양순경 위원 수정안 발의
- 수정안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 안 제9조제1항 위원회 구성 30명으로 변경 및 제4항 분과위원회 삭제
 - 안 제11조제3항 분과위원장 직무대행 삭제
 - 안 제15조제2항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
 - 안 제16조제3호 “참석통지를 받고 4회이상”으로 수정
 -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디자인센터 설치 운영 조항 각각 삭제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수정안대비표 1부. 끝.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491
------	------

제안연월일 : 2011. 2. 21.

제안자 : 양순경 위원외 4인

1. 수정이유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단계로 되어 있는 위원회중 분과위원회를 축소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디자인 센터 위탁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안 제9조제1항중 “4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5조제2항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안 제16조제3호중 “4회 이상”을 “참석통지를 받고 4회 이상”으로 한다.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중 “4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5조제2항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안 제16조제3호중 “4회 이상”을 “참석통지를 받고 4회 이상”으로 한다.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④ <u>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문화분과위원회</u> 2. <u>조형경관분과위원회</u> 3. <u>미술색채분과위원회</u> 4. <u>운영교육분과위원회</u>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p> <p>.....</p> <p>... 30명</p> <p>②-③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p> <p>③ <u>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u>간사는 디자인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디자인업무 담당자가 된다.</u></p> <p>③ (생략)</p>	<p>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원안과 같음)</p> <p>② <u>담당팀장이</u></p> <p>.....</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6조(위원해촉) (생략)</p> <p>1.-2. (생략)</p>	<p>제16조(위원해촉) (원안과 같음)</p> <p>1.-2.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3. <u>정당한 사유없이 디자인심의·자문 등 공공디자인 시책에 4회 이상 참여 하지 않은 경우</u> 4.~5. (생략)</p>	<p>3. <u>참석 통지를 받고 4회 이상</u> 4.~5. (원안과 같음)</p>
<p>제18조(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시장은 디자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디자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시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 2. 기타 디자인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시민단체 ③ 디자인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디자인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디자인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p>	<p>제18조(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1.-2. (원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p>